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회)	

여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외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여권법」이 개정(법률 제19580호, 2023. 8.8. 공포, '24.2.9.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상 관련 조항을 정비(관용·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자 동반자녀 연령상한 하향 조정 포함)하는 한편, 민원인 편의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권 로마자성명 관련 조항 정비

- 1) 여권법에 상향 규정된 조항의 삭제 및 관련 규정 체계 정비(제2조, 제3조, 제3조의2)
- 2) 로마자성명 변경·표기 규정의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제3조의2)

나. 관용·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 관련 조항 정비 등

- 1) 여권법에 상향 규정된 주요 대상자 조항의 삭제 및 나머지 대상자(동반가족 등) 조항의 체계 정비(제7조, 제10조)
- 2) 동반자녀 연령기준을 27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제 7조, 제9조, 제10조)

다. 관용·외교관여권 관리체계 강화 관련 조항 정비

- 1) 여권법에 신설된 발급 현황 조사의 세부 규정 신설(제9조의2, 제12조의2)
- 2) 여권법에 상향 규정된 조항의 삭제(제9조의제2항, 제12조의제2항)

라. 중대범죄자의 여권 무효 처분 절차 조항 신설

- 1) 여권법에 신설된 여권 무효 처분의 송달 절차 규정 신설(제27조의2)

마. 국위손상자 등의 여권 발급 제한 관련 조항 정비

1) 법률에 상항 규정된 조항의 삭제(제26조의2)

바. 여권 사무 관련 각종 알림서비스 근거 조항 정비 및 개선

1)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알림서비스 및 통지 방식의 근거 조항 정비
(제45조)

2) 별도의 사전 동의 없이도 알림 가능하도록 개정(제45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각 호”를 “각 호 및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법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조의2를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변경”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조의2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제2항(중전의 제1항)제8호 중 “사용한 여권상”을 “발급받은 마지막 여권에 수록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여권의 수록 정보 중 로마자성명”을 “로마자성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조의2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조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의2제3호”로 하고, 같은 조 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추천하는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다만 미혼인 동반자녀 중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령 상한 적용의 예외로 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행정직원의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3.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 가.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임·직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관용여권 소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
 - 나. 국외 주재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관용여권 소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과 소속기관이 추천하는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4.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구분”을 “다음 각 호”로, “다음 각 호”를 “해당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제1호나목”을 “제7조제3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2년”을 “2년 이내”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3년”을 “3년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27세”를 “24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27세 미만”을 “24세 미만”으로, “27세가 되는 때”를 “24세가 되는 때”로, “27세가 되는 날”을 “24세가 되는 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관용여권 발급 현황 조사)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반기별로 관용여권 발급 및 반납 현황을 조사하여 관리한다.

제10조 단서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의3제11호”로 하고 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대통령(전직 포함)

나. 국회의장

다. 대법원장

라. 헌법재판소장

마. 국무총리

바. 외교부장관

사. 특명전권대사

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가. 대통령(전직 포함)

나. 국회의장

다. 대법원장

라. 헌법재판소장

마. 국무총리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전직 국회의장

나. 전직 대법원장

다. 전직 헌법재판소장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가. 외교부장관

나. 특명전권대사

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라.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마.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라. 전직 국무총리

마. 전직 외교부장관

중전의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4조의3제10호에 따른 사절단 또는 대표단의 단원

제1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제10조제4호 또는 제5호”를 “법 제4조의3제

10호, 이 영 제10조제5호 또는 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10조 제5호”를 “제10조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3. 제10조의 발급대상자 중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 해당 외교관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다만,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4세가 되는 때에는 24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4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외교관여권 발급 현황 조사) 외교관여권 발급 현황 조사에 관하여는 영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제4항”을 각각 “법 제12조의3”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여권의 무효처분의 송달)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의 여권의 무효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해당 여권의 명의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우편이 1회 반송되거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게시판에 게시
2. 관보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제38조제3항 단서 중 “같은 조 제3항에”를 “제12조의2에”로 한다.

제45조 전단 중 “여권의 명의인이 여권”을 “여권”으로, “안내 등의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을 “안내, 여권 습득 사실 및 수령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로, “문자메시지”를 “문자메시지 등 전자통신매체”로 한다.

제46조제2호 중 “법 제12조”를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유효한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유효한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여권의 규격 등) ① (생략)	제2조(여권의 규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여권과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에는 표지의 오른쪽 위에 나라문장(紋章)을 표시하고, 그 아래에 한글 및 로마자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國號)와 여권 등의 종류를 표기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의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을 상징하는 표식(標識)을 표지의 오른쪽 아래에 추가한다.	② ----- ----- ----- ----- ----- ----- <u>. ----- 각</u> <u>호 및 제7조의2제1항-----</u>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① <u>법 제7조제1항</u> 각 호의 정보는 여권의 개인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이 경우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	제3조(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① <u>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 -----</u> ----- ----- . <후단삭제>

라 한글 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② ~ ④ (생략)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등) <신설>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여권의 수록 정보 중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변경 등) 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② -----

----- 로마
자성명-----

----. <단서 삭제>

있다.

1. ~ 7. (생략)

8.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
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
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
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9. · 11. (생략)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로마자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
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
자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로마자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
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
교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
람으로서 공무(公務)로 국외

1. ~ 7. (현행과 같음)

8. ----- 발급받은 마지
막 여권에 수록된 -----

9. · 11.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

-----.

④ 제2항 및 제3항-----

-----.

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
----- 법 제4조의2제3호-----

-----.

1. 법 제4조의2제1호에 해당하
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추천

에 여행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7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가.

나.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국외 주재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3.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하는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다만 미혼인 동반자녀 중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령 상한 적용의 예외로 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4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행정직원의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3.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임·직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관용여권 소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

나. 국외 주재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관용여권 소지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과 소속기관이 추천하는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4.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4.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
원과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5. 6. (생 략)

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①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
로 한다. 다만, 해당 구분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
기간으로 하는 관용여권을 발급
할 수 있다.

1. 제7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1년 이내
2. 제7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
하는 사람: 2년. 다만,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3. 삭 제

4. 제7조의 발급대상자 중 배우
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해
당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5. 6. (현행과 같음)

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①

----- 다음 각 호-----

해당 구분-----

-----.

1. 제7조제3호가목-----

2. -----
----- 2년 이내. -----

----- 3년 이내-----
-----.

4. -----
-- 24세 -----

월을 더한 기간. 다만, 27세 미
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육
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
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7세가 되는
때에는 27세가 되는 날의 전
날까지로 한다.

②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7조 각 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관용여권은 제1항에 따
른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 때부
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
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신 설>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
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4조제3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

----- . ---- 24세 미
만-----

----- 24세가 되는 때
---- 24세가 되는 날-----
----- .

<삭 제>

제9조의2 (관용여권 발급 현황 조
사)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반기별로 관용여권 발
급 및 반납 현황을 조사하여 관
리한다.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
자) ----- 법 제4조의3제
11호-----

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무총리와 전직 국무총리, 외교부장관과 전직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1) 대통령
- 2) 국무총리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1) 외교부장관
- 2) 특명전권대사
- 3)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 4)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대통령(전직 포함)

나. 국회의장

다. 대법원장

라. 헌법재판소장

마. 국무총리

바. 외교부장관

사. 특명전권대사

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가. 대통령(전직 포함)

나. 국회의장

다. 대법원장

라. 헌법재판소장

마. 국무총리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전직 국회의장

나. 전직 대법원장

5)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다. 전직 국무총리와 전직 외교부 장관이 동반하는 배우자. 다만,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국회의장과 전직 국회의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회의장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나. 전직 국회의장이 동반하는 배우자. 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국회의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전직 헌법재판소장

라. 전직 국무총리

마. 전직 외교부장관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가. 외교부장관

나. 특명전권대사

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라.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마.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 법 제4조의3제10호에 따른 사절단 또는 대표단의 단원

6. (현행 제5호와 같음)

3.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전직 대법원장, 전직 헌법재판소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나.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동반하는 배우자. 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5.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①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은 5

제12조(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① -----

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구분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제1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교업무 수행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 다만, 제10조제5호에 따른 외교업무 수행 목적의 외교관여권 발급의 경우 그 수행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의 한도에서 해당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2. 삭 제

3. 제10조의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 중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 5년.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27세가 되는 때에는 27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

-----.

1. 법 제4조의3제10호, 이 영 제10조제5호 또는 제6호-----
-----.
--- 제10조제6호-----

-----.

3. 제10조의 발급대상자 중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해당 외교관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다만,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의 경우 유효

②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0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같은 조 제1호나목4)의 경우에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 국외 여행을 마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외교관여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때에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6조의2(여권발급 등의 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에서 살인, 강도, 납치, 인신매매, 성범죄, 마약류범죄, 밀항·밀입국이나

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4세가 되는 때에는 24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삭 제>

제12조의2 (외교관여권 발급 현황 조사) 외교관여권 발급 현황 조사에 관하여는 영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제26조의2(여권발급 등의 제한)

<삭 제>

그 밖의 중대한 위법 행위(유죄 판결이 확정된 행위로 한정한다)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고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강제퇴거 조치

2.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항의나 시정·배상·사죄 요구 조치

3.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에 대하여 권익제한이나 의무부과를 신설·강화하는 조치

② 외교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여권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년

2.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상 법정형(法定刑)이 단기

1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거나
그 보다 중한 경우: 3년

나.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
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
만이면서 장기 3년 이상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
당하는 경우: 2년

다. 해당 위법행위의 국내법
상 법정형이 단기 1년 미
만이면서 장기 3년 미만인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해
당하는 경우: 1년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
구하고 위법행위의 내용 및 횡
수, 국위(國威)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할 수 없
다.

제26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① 벌
제12조제4항에서 “긴급한 인도
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26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① 벌
제12조의3-----

는 사유”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발급되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그 여행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한다.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의3-----

-----.

제27조의2(여권의 무효처분의 송달)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 제3항의 여권의 무효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해당 여권의 명의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우편이 1회 반송되거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여권

제38조(수수료의 납부방법) ① ·

② (생략)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여권의 발급 등이 거부·제한되는 경우나 수수료가 명백히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제45조(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명의인이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 여권의 발급·재발급 사실 및 여권 수령 안내 등의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여권의 명의인에게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한다.

사무 대행기관의 게시판에 게시

2. 관보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제38조(수수료의 납부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1
2조의2 에 -----

-----.

제45조(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

----- 여권 -----

----- 안내, 여권 습득 사실 및
수령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

----- 문자메시지 등 전자
통신매체--. -----

-----.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 교부장관(법 제21조에 따라 여 권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 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법 제12조</u> 에 따른 여권의 발 급·재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에 관한 사무	2. <u>법 제12조 및 제12조의2</u> ----- -----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외교부 여권과	
연 락 처	(02) 2002 - 0133